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68
----------	-------

제출년월일 : 2020. 05.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방화장실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개방화장실의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민간개방화장실 지정요건 완화

-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하는 개방화장실의 규모를 완화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이용확대를 통해 시민의 이용편의 증진
-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장정비

### 4. 주요 토의과제

없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 2) 「조례 규제개선 사례 전파」 [법제처 자치법규지원과-2134(2017.12.29.)]
- 3) 자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권고 표준안 시달  
[서울특별시 질병관리과-3416(2019.2.14.)]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0. 4. 23. ~ 5. 13. (제출된 의견 없음)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해당없음
- 3)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공  
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을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의 범위)”를 “(적용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각  
호의 규정에서 시·군 또는 구”를 “각 호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  
라 한다)”로,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  
이 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  
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구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  
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과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항만관련사업”을 “항만 관련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항만관련”을 “항만 관련”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편의제공시  
설등”을 “편의제공시설 등”으로 한다.

제4조 중 “**공중화장실등을**”을 각각 “**공중화장실 등을**”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3항에 따른 별표에서 정한 기준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화장실내**”를 “**화장실 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법 제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을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범위 내에서 관련비용**”을 “**범위에서 관련 비용**”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를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 놓고**”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호서식의**”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건물내부**”를 “**건물 내부**”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이용 환경 수준 향상 및 이용 편의 증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에 따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갖춰 두고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운영하고자 하는”을 “운영하려는”으로, “영 제6조”를 “영 제6조제3항에 따른”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1.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갖춰 두고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 중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1조에 따른”으로, “별표 1호”를 “별표 1”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 및관리조례</u></p>	<p><u>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공중화장실등에 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u>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u>」,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u>공중화장실등</u>이라 함은 <u>공중화장실등에 관한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u>공중화장실 · 개방화장실 · 이동화장실 · 유료화장실</u>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u>공중화장실 등</u>”이란 「<u>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u>」----- ----- 따른 ----- -----</p>
<p>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u>각호의 규정에서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u></p> <p>② 법 제3조제2호에서 “<u>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u></p>	<p>제3조(적용범위) ① ----- - <u>각 호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하 “구”라 한다)</u>----- ----- <u>관계 법령</u>----- -----</p> <p>② 법 제3조제2호에서 “「<u>관광진흥법</u>」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u>관광지·관광단</u></p>

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 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조 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등으로서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생략)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

지 및 지원시설 중 구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이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과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 항만 관련 사업-----
2. 항만 관련 -----
3. ----- 편의제공시설 등-----
4. (현행과 같음)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  
---- 공중화장실 등을 -----  
-----  
-----  
-----  
-----.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략)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생략)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에 따른 별표에서 정한 기준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 화장실 내-----  
-----.
4. (현행과 같음)
5. -----  
----- 법 제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  
-----  
-----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게 -----  
----- 범위-----



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1. ~ 4. (생략)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  
-----  
-----  
-----.

② 제1항에 따라 -----  
-----  
-----  
-----  
----- 범위  
위에서 관련 비용-----  
-----.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  
-----  
-----  
----- 각 호의 편의용품  
을 갖추 놓고 -----.  
-----  
-----.

-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화장실 내에 비치 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 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

-----  
----- 각 호 -----  
-----.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  
----- 별지  
제1호서식의 -----  
-----  
-----.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  
-----.  
----- 건물 내부 -----  
-----.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  
----- 법 제9조에 따른 -----  
-----  
-----  
-----  
-----.

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 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구청에서 설치·관리할 수 있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또는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략)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략)

- .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이용 환경수준 향상 및 이용 편의 증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  
-----  
-----  
-----  
-----  
-----  
-----  
-----  
-----  
-----  
-----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  
-----  
-----  
-----  
-----  
-----  
-- 범위-----  
-----.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에 따라 -----  
-----  
-----  
-----  
---- 각 호-----.

1. ~ 4. (현행과 같음)

② -----  
-----  
-----  
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  
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  
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  
청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  
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  
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  
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에서 제외한다.

1. ~ 3.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  
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  
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  
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  
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  
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갖  
춰 두고 제공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  
----- 운영하려는 -----  
----- 영 제6조제3항에 따  
른 -----  
별지 제2호서식-----  
----- 각 호-----  
-----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 변경하려는 -----  
-----  
----- 변경하려는 -----  
----- 별지  
제2호서식-----  
-----  
-----.

③ -----  
-----  
----- 별지 제  
3호서식-----

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생략)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호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  
----- 각 호-----  
-----.

1.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갖추 두고 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에 따른 -----  
-----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법 제21조에 따른 -----  
----- 별표 1-  
-----.

#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 4. 작성자 : 행정관리국 청소행정과 송정호(☎3153-9234)